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8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2005. 12월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『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』에 맞게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·형평성을 기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(안 제1조 내지 제7조)
 -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
 - “동사무소”로 규정된 조문을 “동”으로 개정
 -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
- 나.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(안 제7조, 제11조)
 - 주민자치센터 시설·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
- 다.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(안 제17조, 제18조 및 제20종)
 -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(중선거구제)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
 -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

-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, 각종 교육·연수 등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
- 위원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촉함으로써 위원의 책무 강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6. 5. 10 ~ 5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- 마. 기 타 : 표준조례안 시달(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-2271, 2005. 12. 6.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 으로 “동법” 을 “같은법” 으로 “동 사무소” 를 “동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, 제3조제3호, 제4조제1항,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“동 사무소” 를 각각 “동” 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시설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 이라 한다)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한다.” 를 “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(이하 “자치센터의 운영” 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.” 로 하고, 동조제4항중 “동 사무소의 동장” 을 “동장” 으로 하며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4항중 “변상” 을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” 으로 한다.

제15조중 “동 사무소” 를 “동” 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중 “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

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” 를 “있다.” 로 하고,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“· 동 사무소” 를 “동” 으로 “선출된 후보자” 를 “선정된 자” 로 하며, 동항제1호중 “후보자” 를 “자” 로 하고, 동항제2호중 “선출된 후보자” 를 “선정된 자” 로 하며,
동조제5항중 “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 사무소의 관할구역”을 “당해 동의 관할구역”으로 하고, 동조제7항중 “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” 을 “고문의 임기는 2년” 으로 한다.

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“당연직이 아닌 고문” 을 “고문” 으로 하고,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동조제1항제1호중 “동 사무소” 를 “동” 으로 하며,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당연직이 아닌 고문” 을 “고문” 으로 한다.

6.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원 등의 임기도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[별표]

사용료 등 기준(제10조 관련)

구 분		기 준	금 액		비 고
사용료	다목적 프로그램실 이용	1회 (2시간)	10,000원		※ 냉·난방기 사용시 기준 금액의 50% 가산
	시설·장비활용 프로그램 이용	1회 (1시간)	청소년	500원	※ 1개월 단위로 15,000원 초과할 수 없음
일반인			1,000원		
수강료	강사·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	1인 1회 (1시간)	청소년	1,000원	※ 1개월 단위로 계산시 일반인 기준으로 20,000원 (청소년 10,000원)을 초과 할 수 없음 (단 재료비는 본인 부담)
			일반인	2,000원	
기 타	면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·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			※ 감면비율 100%
	감 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타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			※ 감면비율 50%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————— 「지방자치법」 ————— 같은법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동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
<p>제2조 (정의) (생 략) 1. “주민자치센터”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. 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동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 (원칙) (생 략) 1. ~ 2. (생 략) 3.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. ~ 5. (생 략)</p>	<p>제3조(원칙)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동 ————— 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 (설치등)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(생 략)</p>	<p>제4조(설치등)①————— 동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동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②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능) ①(생략)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<u>동사무소</u>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. ③(생략)</p>	<p>제5조(기능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동-----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(이하 "시설 등"이라 한다)을 갖추어야 한다.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,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, <u>동사무소별</u> 특성,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.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<u>동사무소</u>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(생략)</p>	<p>제6조(시설 및 프로그램) ①----- ----- -----동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동----- ----- ----- ③----- -----동----- ----- ----- 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(이하 "자치센터의 운영"라 한다)은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 결정 한다. ②~③(생략)</p>	<p>제7조(운영)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(이하 "자치센터의 운영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②~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<u>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~⑥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④----- -----<u>동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⑤~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 (이용 등) ①~③(생략)</p> <p>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<u>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11조 (이용 등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----- ----- -----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</u>----- -----</p>
<p>제15조 (설치)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 자치위원회를 둔다.</p>	<p>제15조 (설치) 동----- ----- -----<u>동</u>----- -----</p>
<p>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,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1.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, 통장대표,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·언론·문화·예술 기타 시민·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</p> <p>2.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</p> <p>③~④(생략)</p> <p>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,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.</p> <p>⑥(생략)</p> <p>⑦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②동</p> <p>선정된 자</p> <p>1. 자</p> <p>2. 선정된 자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당해 동 의 관할구역</p> <p>⑥(현행과 같음)</p> <p>⑦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 (위원장의 직무 등) ①~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제20조 (해촉)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</p> <p>2~5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8조 (위원장의 직무 등) 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·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 (해촉)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<단서조항 삭제></p> <p>1. 당해 동 _____ _____</p> <p>2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형사 또는 비위사건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</p> <p>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</p>